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 정비 촉구 결의안

(구미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18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구미경, 강석주, 김태수,
남창진, 박춘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홍국표,
황유정 의원(10명)

1. 주문

- 국회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세대 내 실내 건축공사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 하자보수 기준, 안전관리 절차 등 실내건축공사의 표준화 근거를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하위 법령 · 지침을 정비하고, 실내건축 분야의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를 제도화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및 견적서 작성기준을 정비하여 불공정 계약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것.
- 정부와 국회는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정책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고, 시민의 주거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내 공동주택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는 계약금액 산정의 불투명성, 자재 · 인건비 미구분, 공사 중 변경계약 미체결, 하자보수 기준 미비,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등에는 세대 내 실내건축공사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절차나 표준이 존재하지 않아, 공사 과정의 공정성과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 대한 등록·감독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일부만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어렵다.
- 이로 인해 공사 계약 단계에서부터 시공, 하자보수, 분쟁조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들은 불합리한 계약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제도의 법제화는 소비자 보호를 넘어, 건설산업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시공자·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이다.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실내건축 분야의 표준계약서 제도 및 안전관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인증제를 통해 시공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 이에 본 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세대 내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지방자치법」

4. 이송처

- 국회 / 국토교통부 / 공정거래위원회 / 서울특별시장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 정비 촉구 결의안

서울시 내 공동주택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는 계약 금액 산정의 불투명성, 자재·인건비 미구분, 공사 중 변경계약 미체결, 하자 보수 기준 미비,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등에는 세대 내 실내건축공사에 대한 별도의 절차나 표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의 공정성 확보, 하자보수의 신속처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지만, 등록·도급·하자보수·안전관리 등 주요 사무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괄 위임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와 제도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불투명한 견적과 계약, 미흡한 하자보수, 무자격 시공에 따른 안전사고 등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으며, 관리주체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내건축공사 표준화와 제도정비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내건축 표준계약서, 시공자 인증제, 하자보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소비자 권리와 시공 품질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법제 마련

국회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세대 내 실내건축 공사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 하자보수 기준, 공사신고 및 안전관리 절차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안전관리 강화 및 시공자 관리체계 확립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공사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와 시공자 면허·보험 확인제, 공정별 하자보수 기간 명문화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불공정 계약행위 방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및 견적서 작성기준을 정비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4. 지방정부 역할 확대

정부는 지자체가 실내건축공사 관련 신고·관리·분쟁조정 등 행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 권한위임 체계와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실내건축공사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0. 20.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